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시행 2025.09.01.] [약관 2025.08.22.,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은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수신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수금약관"을 적용한다.<개정 2022.10.31.>

제1조의2(용어의 정의) ① 이 예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퇴직연금사업자"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디폴트옵션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로써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따라 디폴트옵션제도의 운영에 의해 가입되는 정기예금을 말한다.
 6.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제2조(취급대상) 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31.]

제3조(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거치식예금"으로 한다.

제4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로 한다.<개정 2022.10.31.>

- ② 만기일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다만, 예금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③ 기간을 월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최종월의 응당일을 만기일로 한다. 최종월에 응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만기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6개월로 한다.<신설 2022.10.31.>

제6조(만기처리방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개정 2022.10.31.>

1. 사용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경우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한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 이자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한다.

3. 재예치시에는 재예치 당일을 신규일로 한다. 단, 만기일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개정 2022.10.31.>

1.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된다.

2.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예치하는 경우 재예치 이자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

③ 삭제<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제7조(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신규일 당일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예치일로부터 인출일 전일까지의 예금 잔액에 이율과 예치일수(예치일로부터 인출일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누어 산출(원미만 절사)한다.<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일 전에 고객이 지급 청구할 때에는 신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10.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10.31.>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다.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라. 수탁자의 사임

4.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계약이전)
 5.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6.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의 지급
 7.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 및 가입자의 해외이주 (개인형IRP에 한함)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④ 제3항의 사유에 따른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약정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일 당시의 영업점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제3항의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10.31.>
1. 약정기간 12개월 이하 : 약정기간 별 약정이율
 2. 약정기간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 12개월제 약정이율
 3. 약정기간 24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4. 삭제 <2022.10.31.>
5. 삭제 <2022.10.31.>
6. 삭제 <2022.10.31.>

제8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 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9조(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개정 2022.10.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0.31.>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③ 삭제 <2022.10.31.>

제10조(거래제한 등)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양수도,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하다.<개정 2022.10.31.>

② 이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여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10.31.>

③ 이 예금은 세금우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하다.

제11조(예금자 보호)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된다.<개정 2022.10.31., 2024.06.24., 2025.08.22.>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개정 2022.10.31., 2024.06.24.>

③ 이 예금 가입 시 제1항 내지 제2항의 내용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

부칙 <2025.8.22>

이 약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